

● 제303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830)

2021. 12.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정진술 의원 발의]

의안번호 2830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정진술 의원 발의 (찬성 24명)
-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15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정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환경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보완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종전에는 조례 제정 관련 법령명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조례 개정 근거 법령인 「환경보건법」을 포함시켜 조례 제정 의미를 확실히 함 (안 제1조)
- 나. 종전 조례에서 정한 “관리계획”을 「환경보건법」에서 정의한 “지역계획”으로 용어를 정비(안 제7조 등)

- 다. 환경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른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7조)
- 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던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을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2조 신설)
- 마. 건강영향조사 청원이 있는 경우 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11조 및 안 제13조)
- 바. 청원 조사결과에 따른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14조 신설)
- 사.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변경, 지역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한 시책,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등을 심의 사항을 반영함(안 제19조)
- 아. 조문의 순서 재정리(안 제12조~제31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환경보건법」
-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보건법」이 개정(2021.7.6.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의 순서 등을 재정비하고자 발의되었음.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개정안의 배경 및 필요성

- 2021년 7월 시행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송옥주 의원(2020.6.1.) 과 정부(2020.6.26.)에서 발의(제출)된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병심사한 대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종합계획 수립·기초조사 등의 대상질환 확대 (안 제6조·제14조 및 제27조의 2)
나.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안 제6조의2 신설, 안 제7조제3항)
다.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안 제10조의2 신설)
라.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의 거부 또는 방해 등의 금지 (안 제15조, 안 제31조 제2항 및 제33조제1항 및 제 3항 신설)
마. 시·도지사에게 대한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안 제17조)
바. 어린이에 대한 건강진단 및 치료 지원(안 제25조의2)

- 환경부에서는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지자체 중심으로 강화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했다고 발표하였음.<sup>1)</sup>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순서 재정리를 통해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하였음.

##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1)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 제출<sup>2)</sup>

- 해당 개정내용은 지역별로 환경적,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 등이 달라 환경보건 이슈가 상이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광역시·자치체)가 관할구역의 환경보건 관련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임.
  -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건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개정되었음.
- 환경부에서는 지역계획에는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관할 구역 환경보건 현황, 민감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음.<sup>3)</sup>

1) 환경부(2020),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된다”, 환경부 보도자료(2021.6.23).

2) 첨부자료 1. 관련 3단비교표(환경보건법, 현행조례, 개정안)

3) 환경부(2021.6.23.),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등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보도자료(2021.6.23).

## 2) 건강영향조사의 청원과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등<sup>4)</sup>

- 건강영향조사란,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건강영향이 있다면 그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영향이 없는 경우 주민들이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임.
  - 지금까지 시행된 주요 건강영향조사로는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선 노출과 주민 건강실태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건강영향조사(2021), 태안 유류 유출 피해지역 어린이·청소년 건강영향조사(2021), 생리대 부작용 논란에 대한 건강영향조사(2020) 등이 있음.
-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환경부장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주체에 포함되게 되고, 처리의 기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
- 환경부에서는 해당 개정으로 인해 체계적인 청원 처리 도모 및 환경유해인자 관리가 유도될 것이라고 입법효과를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환경부에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관련 인프라 등 준비가 안 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긴 것 이라는 비판도 존재함.<sup>5)</sup>

4) 첨부자료 2. 관련 3단비교표(환경보건법, 현행조례, 개정안)

5) 한국일보(2021.09.09.). “지자체로 넘겨진 건강영향조사...”오염피해 더 방치될 것“반발”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82416280004152> (2021.12.12. 검색)

### 3) 그 외 기타사항

- 그 외에도 개정조례안에서는 「환경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청원 조사결과에 따른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관한 사항,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변경, 지역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한 시책,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등 심의사항을 반영하였음.

### 3 종합의견

- 해당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상위법과 조례 개정에 따른 지자체의 지역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관련된 사항들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문 의 처

도미화 입법조사관 (02-2180-8147)





<p>2.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발생 현황</p> <p>3. 환경유해인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한 사항</p> <p>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p> <p>5.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분석·예방 및 관리 방안</p> <p>6.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p>	<p>&lt;신설&gt;</p> <p>&lt;신설&gt;</p>	<p>-----.</p> <p>② <u>시장은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세워야 한다.</u></p> <p>③ <u>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1. <u>지역환경보건에 관</u></p>
--	-------------------------------------	---

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7.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8.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환경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10. 환경보건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

11.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12. 그 밖에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지역환경보

<신설>

② 시장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면 미리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⑤ 시장은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지역계획을-----  
-----  
-----  
-----  
-----  
-----  
-----  
-----  
-----  
-----.

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③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시의 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⑦ -----  
-----  
-----  
----- 지역계획의 -----  
-----  
-----  
-----  
-----  
-----  
-----.

⑧ ----- 지역  
계획을 -----  
-----  
-----.

⑨ -----  
----- 지역  
계획의 -----  
-----  
-----  
-----.

는 지역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내  
용 및 수립·변경·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참고 2. 건강영향조사의 청원과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관련 3단표**

환경보건법	현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제17조(건강영향조사 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환경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 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 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원을 처리한다.</p> <p>1. 환경부장관</p> <p>가.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 시·도·특별자치도 에 걸친 조사가 필</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제12조(건강영향조사 의 청원) ① 시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환경유해 인자가 건강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 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제1호부터 제5 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 강피해가 발생하였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원을 처리한다.</p> <p>1.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 시·도·특별자치도</p>

<p>요한 경우</p> <p>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p> <p>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p> <p>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p> <p>2. 시·도지사: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p>		<p><u>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u></p> <p>2. <u>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u></p> <p>3. <u>환경부장관 또는 시장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u></p> <p>4. <u>시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5. <u>그 밖에 시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u></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u></p>
--	--	--

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 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위원회의 심의(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